

水産業法の 場所에 關한 效力

李 奉 雨 *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sheries Act

Lee, Bong Woo

目	次
I. 概 說	4. 領 海
II. 場所에 關한 效力 範圍	5. 排他的 經濟水域
III. 公共水面	6. 公 海
1. 意 義	7. 外國領海 및 排他的 經濟水域
2. 公共水面的 範圍	IV. 非公共水面
3. 國內水域	V. 結 語

I. 概 說

法の 效力이란 一般的으로 法の效力이 미치는 範圍를 말한다. 法の 效力에는 人的效力 物的效力 場所의效力으로 나누어 說明하는 것이 보통인바 여기서는 場所의效力에 국한하여 說明하기로 한다.

II. 場所에 關한 效力範圍

여기에서 場所에 關한 效力이란 水産業法이 어떠한 場所(水域)에 있어서 行하여지는 漁業을 規律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이고 소위 領土主權에 基한 法の 屬地的效力만의 問題는 아니다. 왜냐하면 領土主權에 基한 屬地的效力만의 問題라면 그 미치는 범위는 當然히 領土內에 限定되기 때문이다. 우리 水産業法은 第3條에서 公共水面이 아닌 水面에는 別段의 規定이 없는 한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제1項) 公共水面이 아닌 水面이 公共水面과 連接하여 一體가 되었을 때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 (제2項)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以下 이를 分說하기로 한다.

* 동영수산전문대학 수산경영과 조교수

III. 公共水面

1. 意 義

公共水面이라함은 公共用に 供하는 바다 湖沼, 河川, 其他의 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 (水産業法 第2條6號)

不特定多數人の 使用에 開放되어 있는 水面이면 그만이고 그 水面 또는 敷地의 所有者가 누구인가는 이를 묻지 아니한다.

例컨대 私的所有에 속하는 水面과 같이 水面에 대한 支配가 法的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水域에 自然的으로 棲息하는 水族의 支配까지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例컨대 私有地下에 自然的으로 매장되어 있는 未採掘礦物과 土地所有權과의 關係) 따라서 그 水面의 敷地가 私人的 所有에 屬하여 있어도 그 水面이 公共의 用に 供하여져 있는 水面인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公共水面이다. 따라서 이러한 私有水面에 漁業權을 免許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公共水面의 範圍

1) 適用範圍

우리 漁業法은 水族의 棲息 따라서 그 採殖이 가능한 모든 水域에 있어서의 水族의 採殖을 規律하는 것은 아니다. 卽 公共의 用に 供하지 아니하는 水面에는 別段의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이 法律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適用範圍를 場所的(屬地的)으로 限定하는 規定이라.

2) 別段의 規定

여기에서 別段의 規定이란 水産業法 第3條2項의 公共水面이 아닌 水面이 公共水面과 連接하여 一體가 되었을 때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고 하는 規定이다.

3) 公共의 用に 供하는 水面

公共의 用に 供하는 水面(以下 公共水面)이란 漁業과의 關係에서 公共性이 있는 水面 卽 누구라도 漁業에 利用해도 좋은 水面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다. 바다, 河川, 湖沼등이 公共의 用に 供하는 水面 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灌溉用溜地, 溝渠등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國家, 地方自治團體, 水利組合等의 公共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것은 灌溉가 主된 目的이라도 漁業法上의 公共水面 이라고 解하고 公法人 以外의 者가 灌溉를 主目的으로 하여 所有 또는 管理 하는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制限的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될 法文上의 根據가 없기 때문에 公共의 用に 供하여져 있는

水面인 以上 公共의 用에 供하여있는 目的 用途를 불문하고 모두 여기에서 말하는 公共의 用에 供하는 水面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4) 公共의 用에 供하는 水面의 與否

公共의 用에 供하는 水面인가 아닌가는 水産業法이 適用되느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문제로서는 이것의 인정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實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官有의 溜池가 一定地域의 灌溉用에 供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當該溜池에 水利組合이 設置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것은 公共의 用에 供하는 水面이고 따라서 申請者가 水利關係者인가 아닌가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漁業免許를 부여하는 것은 可能하고 또한 魚類養殖 事業을 爲하여 여기에 水面使用의 許可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大正七年 3月25日 農商務省 水產局長)

(2) 灌溉用水面이라고 할지라도 公共用水面인가 혹은 非公共用水面인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반드시 事實上 公共의 用에 供하여져 있는 水面이나 아니냐에 의하여 判斷 하는 것이 옳다.(昭和四年 12月17日 水產局長)

(3) 官有溜池가 一定地域의 灌溉用에 供하여져 있을때에는 公共用水面이다.

(4) 公共의 用에 供하는 河川으로부터 引水되지 않는 水利組合設置의 灌溉用水路는 非公共用水面이다(昭和5年月24日 水產局長)

3. 國內水域(Internal Waters)

地理學的 의미에서 國內水域 또는 內水란 國家領土에 의하여 包圍되거나 그 領土위를 흐르는 水域을 말한다. 例를들면 運河, 江, 湖水등을 말한다. 그러나 海洋國際法上 國內水域의 의미는 이보다 넓어서 일반적인 領海基準線 안쪽에 위치한 모든 水域을 의미한다. 따라서 僻處에 노출되는 모래땅과 해안사이의 水域, 港口水域, 碇泊地 이른바 역사적 灣, 海안선 안으로 굽은 水域등을 모두 포함한다. 國內水域의 法的地位에 關한 成文法規는 별로 많지 않다. 대부분이 慣習法規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國際慣習法에 의하면 國內水域은 대체로 국가 영토와 同一視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國內水域은 여기서 말하는 公共水面에 해당하고 水產法規가 全面的으로 適用된다.

4. 領海(Territorial Sea)

領海란 國內水域을 넘어서 일정범위(1981年 12月1日 現在資料에서는 各國의 領海의 폭은 다음과 같다.

3해리 — 14개국

4해리	—	2개국
6해리	—	4개국
12해리	—	83개국
15해리	—	1개국
20해리	—	1개국
30해리	—	2개국
35해리	—	1개국
50해리	—	1개국
70해리	—	1개국
100해리	—	1개국
150해리	—	1개국
200해리	—	15개국

3해리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미국, 덴마크, 동독, 서독, 네델란드, 영국등 전통적 해양국가가 포함되어 있음에 注目된다.) 까지의 水域으로 國際法에 정해진 條件에 따라 연안국이 領土管轄權에 準하는 排他的管轄權을 行事하는 水域이다. 領海에서의 沿岸國의 主權行使는 무엇보다도 모든 國家의 船舶의 無害通行權에 의하여 制限된다. 이 점이 領土主權과 다른 차이점이라 할수있다. 領海의 法的地位에 關하여는 理論과 實定法이 약간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領海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은 國內水域의 경우보다 더욱 第三者의 權利를 인정하고 있어서 公海의 요소를 어느정도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그러나 實定法이나 國家들의 慣行은 領海上에서 領土管轄權을 行使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연안국은 그의 領海內에서는 國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領海內의 漁業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漁業團東의 國內法令을 制定하고 領海漁業을 規制할 수 있다.

5.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

排他的經濟水域이란 領海를 측정하는 基線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領海에 인접한 海域이다. 1982.12.10에 체결된 海洋法협약 55~58조에 의하면 排他的經濟水域이란 領海를 넘어서 그에 인접한 200해리이내에서 그 海底, 地下, 上部水域의 資源개발 및 保存 그리고 公害防上에 關한 연안국의 排他的權限이 인정되는 水域으로 航海 및 그 上空비행에 關하여는 公海와 마찬가지로 第三國의 自由가 인정된다. 이 개념의 시초는 1946년 南美國家들의 實行에서 비롯된다. 1945年 미국의 트루만대통령이 大陸棚關係를 선언하였으나 太平洋沿岸에는 大륙봉이 없기 때문에 이지역의 필수자원을 獨점하려는 뜻에서 200해리 어업수역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200해리의 根據는 南美 太平洋을 沿하여 北向하는 페루 海流의 幅이 200해리로서 여기에는 방대한 양의 水産資源이 분포되어 있는 까닭이다. 유엔통계에 의하면 1983년까지 200해리 經

濟水域을 宣布한 국가는 54개국에 이르렀으며 이외에도 약 22개국이 200해리 漁業水域을 설정하였다. 이 水域이 보편화 되면 海洋의 약 36%가 이 水域에 편입되고 그렇게 되면 商業性이 있는 全魚族의 90% 이상이 그리고 海底賦存石油資源의 약 87%가 이제도下에 들어가게 된다.

排他的經濟水域의 法的性格은 資源에 관하여는 部分的으로 領海와 같은 성질을 가지면서도 航海문제에 있어서는 公海와 비슷한 그야말로 領海도 公海도 아닌 第三의 海域이다. 排他的經濟水域개념의 핵심은 연안국이 이 水域內의 天然資源(生物資源 및 非生物資源)에 대하여 探查, 開發, 保存 및 管理를 爲한 主權的權利(sovereign rights)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을 漁業資源의 측면에서 말하면 연안국이 排他的經濟水域에 있는 漁業資源을 探查 또는 開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他國은 沿岸國의 同意를 求하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探查 또는 開發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資源의 保存과 管理에 대하여도 他國 또는 國際機關의 干與를 排除하고 오로지 沿岸國의 判斷에서 이것을 行한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主權的權利의 意味內容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傳統漁業國의 既得權이나 實績의 尊重등과 같은 해석이 생길여지가 없는것이다.

排他的 經濟水域制度는 종래의 公海漁業自由에 입각한 전통적 國際漁業制度에 대하여 완전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연안국은 經濟水域內의 生物資源의 保存利用에 관해 主權的權利를 가지며 最大持續的生產의 유지를 위한 適正漁獲量을 결정하고 自國어획량을 초과하는 잉여분에 대해서만 外國漁船의 漁撈行爲를 허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外國漁船의 操業許容여부는 연안국의 意思에 크게 좌우되게 되었으며 연안국에 의한 入漁料의 부과는 遠洋漁業國에게 큰부담을 안겨주었다. 1982年 海洋法協約은 國際漁業制度和 關聯하여 高度回遊性魚族(각종 참치류, 고등어) 海洋哺乳動物(고래) 遡可性(연어, 송어) 降下性魚族(뱀장어) 등 특수어족에 대하여는 특별한 어업제도를 인정하고 그밖의 魚族에 대하여는 200해리 水域內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다만 定着性魚族(굴, 전복)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規制하지않고 大陸棚制度에서 규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排他的經濟水域을 宣布하지 않았으나 他國의 排他的經濟水域안에서는 우리나라 國民은 우리나라의 水産法令이 적용을 받는 동시에 그 나라의 漁業規제도 중첩적으로 받는다고 할 것이다.

6. 公 海(High Seas)

公海란 어느 特定國家의 管轄權에 속하지 않는 바다부분을 의미한다. 1982年 12월 10일에 체결된 海洋法協約 第86條도 이 점을 인정하여 公海規定은 排他的經濟水域, 領海, 國內水域, 群島水域이 아닌 바다부분에 적용된다고 한다. 海底는 포함하지 않고 上部水域 및 바다위를

의미한다. 公海에는 公海自由의 原則(漁業自由의 原則)이 支配하여 어떠한 國家의 船舶도 公海에서 自由로이 漁業을 行할수 있는것이 國際法上 認定되어 있으므로 連안국이 自國의 利益 翁호를 爲하여 公海上에서 外國船이 行하는 漁業을 自國의 法令에 의하여 規制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公海自由의 原則은 어떤 國家도 公海에 대하여 領有權을 가지고 있지 않는것을 의미할 뿐이며 連안국이 公海에 있는 自國民내지 自國船舶에 대하여 屬人的支配權을 가지는것 까지도 否定하는 것은 아니므로 連안국이 公海上에서 操業하는 自國의 漁船을 管理規制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沿岸海域의 水産資源의 고갈, 漁船의 動力化, 大型化는 漁業活動을 불가피하게 公海로 확대하게 하였으며 連안국의 漁業操業은 漁業權을 除外하고 領海보다는 도리어 公海上에서 行하여지고 있는것이 現象이다. 따라서 公海에 있어서의 自國民의 漁業活動을 規制하는 것은 自國의 漁業秩序를 유지하고 水産資源을 保護하여 一國의 漁業生産을 確保하는데 必要 不可缺한것이 되어있다. 卽 公海는 우리國民의 누구에게도 漁業에 대해 解放된 水面 卽 公共水面에 불과하고 水産法令을 적용할 수 있는 水面에 속한다.

判例도 이를 肯定하고 있다. (最判 昭35. 12. 16) 水産業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漁業團束法令이 公海上에 効力を 미치는 實定法上的 根據는 다음과 같다.

刑法 第3條는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서 罪를 犯한 內國人에게 適用한다(屬人主義)고 하였고 同 第4條는 本法은 大韓民國領域外에 있는 大韓民國의 船舶또는 航空機 內에서 罪를 犯한 外國人에게 適用한다(屬地主義)고 하였고 刑法總則 第8條는 本法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他法令에 定한 罪에 適用한다고 하였으므로 公海上의 內國人 및 우리 船舶內의 外國人에게 刑法이 適用되며 水産法令違反의 罪도 그 罰則이 이들에게도 適用되는 것이다.

7. 外國領海 및 排他的經濟水域

外國領海 및 排他的經濟水域은 沿岸國의 排他的支配下에 놓여진 결과 同海域內에서의 漁業은 沿岸國民에 留保되고 漁業에 解放된 海域은 아니다. 따라서 公共水面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水産業法은 非公共水面에서도 그것이 公共水面과 連接하여 一體를 이루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한 결과 검토의 여지가 있다.

IV. 非公共水面

水産業法은 公共의 用에 供하지 않는 水面(以下 非公共水面이라 한다)에는 適用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지만 公共水面과 連接하여 一體를 이루는 水面(以下 連接一體面이라 한다)에는 公共水面과 同一하게 다루어진다(水産漁法 第3條2項)

公共水面과 連接一切의 非公共水面이란 그 水面의 客觀的狀態가 公共水面과 合하여 社會觀

念上 一切로서 인식되는 정도의 連接 卽 外觀上 1水面을 형성하고 있는 公共用에 供하지 않는 水面을 말한다. 連接一切란 分界가 없음을 말한다. 卽 公共水面과 이 사이에 兩者를 나누는 境界가 없이 一體로 인식되는 것과 같이 相接하여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兩水面이 一條 (한가다, 한줄기)의 水域에 의해 連結되고 있을뿐인 경우나 公共水面 또는 連接一體水面에 通하는 水面일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連接一切는 아니다. 鹽田이 별도로 使用되지 않고 水面이 公共의 用에 供하여져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鹽田이 公共의 用에 供하지 않는 水面이라도 公共의 用에 供하는 水面과 連接하여 一體를 이루는 경우는 水産法令이 적용된다. 公共水面과 連接하여 一體를 이루는 水面은 公共水面과 마찬가지로 漁業에 解放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비록 私有水面인 경우에도 權利를 가진 者 以外의 者에게 漁業免許, 許可, 申告의 効果로서 그 水面에서 自由로 이 漁業을 할수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이러한 水面의 占有者 또는 그 敷地의 所有者는 사실상 現저하게 그 權利를 침해받고 거의 그 權利의 效果를 상실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漁業權을 免許할때에는 이러한 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同意를 要함은 물론 이러한 水面의 占有者 또는 敷地의 所有者는 行政官廳의 許可를 받아 漁業에 關한 利用을 制限 또는 禁止를 할수있게 하였다. (法 第4條) 一般의 漁業이 行해지는 公共水面에 連接한 水面이기 때문에 公共水面에 있어서의 資源保護내지 漁業調整上 漁業에 關해서는 非公共水面이라고 해서 無規制해서는 안되는 점에 同規定을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外國領海및 排他的經濟水域은 前述과 같이 우리나라의 漁業과의 關係에서는 非公共水面이라고 해석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漁業에서 보면 公共水面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領域 내지 公海외의 關係에서 보면 많은경우 連接해서 一體를 이룬다. 따라서 文理上은 第4條에 의해 漁業法の 適用은 否定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래 外國領海에 대한 우리 漁業法の 適用에 관해서는 否定的인 見解가 强하다. 그 論據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第1로 領海內에서의 漁業은 連안국에 留保되고 그 侵犯은 連안국의 法益侵害로서 連안국의 處罰權에 복종하는 것이란 것.

第2로 漁業法中에는 漁業權의 設定등 당연히 外國의 領海에 미칠수 없는 性質의 規定이 있고 其他 여러가지의 制限, 禁止, 指示, 命令등 多様な 行政上의 權力作用이 規定되고 있는데 外國領海를 連接一體面이라고 하면 이들 모든 權力作用을 포함하는 漁業法の 規定이 이들의 水域에 적용되는 것이 되고 連안국과의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는 것.

第3으로 連接一體를 이루는 外國領海및 排他的經濟水域도 適用範圍로 한다면 實質的으로는 世界의 거의모든 領域을 포함하는것이 되고 場所의 限定이 없다는 것과 同一하게 귀착 된다는 것.

그러나 第一의 點에 대하여는 外國領海 내지 排他的經濟水域까지 法の 適用範圍에 포함시키

는가 어떤가는 소위 立法管轄權의 문제이고 이것이 一國이 自由는 아니고 거기에 國際法上의 制限이 存在한다고 할지라도 合理的인 必要가 있다면 그러한 立法을 排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우선 境界가 없는 海洋을 이동하여 다니는 水産資源의 特性에서 본다면 外國領海 내지 排他的經濟水域이라고 해서 그것이 오직 外國法益과 關係를 가질뿐이라고 할수 없다. 다음으로 前述과 같이 第4條의 취지는 法이 本來規律의 對象으로 하고 있는 公水漁業에 대한 資源的인 영향으로 인하여 그것과 連接一體를 이루는 水面에도 法の 規律을 미친다고 하는점에 있다. 따라서 資源的인 영향이 생각되는 海域이라면 이를 法の 適用範圍에 포함시켜도 不適合은 없다. 물론 現實의 執行의 문제는 다르다. 第二의 論點에 대해서는 立法管轄의 문제와 그 執行과의 混同이 의심된다. 連接一體面이 法の 適用에 관해 公共水面과 同一하게 다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執行은 별문제이고 外國主權과의 저촉하는 執行(例컨대 外國領海內에 대한 漁業權의 免許)이 不可能한 것은 물론이다. 其他 行政上의 權力作用의 規定과 그 具體的인 執行에 관해서도 同一하다. 따라서 연안국과의 友好에 이바지 하는 것은 있어도 法の 適用範圍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해 마찰이 생기는 것은 있을수 없다. 第三點과의 關係에서도 4條의 취지는 連接一體水面이 본래규율의 對象으로 되는 公水漁業에 資源的으로 영향을 주기때문에 無規制로는 안된다고 하는 點에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公水漁業에 영향이 생각되는한 法の 適用을 보는것은 당연하고 世界의 거의모든 領域을 포함하게 된다는 理由에 의한 非難은 당치않다. 그래서 이를 오로지 地形의 문제로서 理解하면 連接하는 이상 거기에 地形의 限界는 없는 것이어서 文字 그대로 海洋은 하나이다. 그러나 4條의 前述한 취지에서 본다면 단지 地形만의 문제는 아니고 資源的으로 連接一體가 아니면 안된다. 결국 資源 卽 漁場으로서 본 連接一體性이다. 判例도 外國領海에 대해 連接一體性 때문에 水産業法의 適用이 있다고 한다(最判 昭46년 4월22일). 다만 이것이 地形만의 문제가 아니고 資源 卽 漁場으로서 본 連接一體性이라고 하면 回遊性水産資源에 대하여 그것이 外國領海에 대해 문제되는 경우와 定着性水産資源의 경우와는 반드시 結論을 같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水産資源의 適正利用과 自由競爭의 制限에 의한 漁民保護上의 必要를 理由로 事實上 操業 가능한 全海域이 適用範圍라는 說이 있다. 法の 文理에 의하면 本法이 適用되는 것은 公共水面 및 連接一體水面이므로 이 說은 連接一體性을 事實上의 操業可能性으로 보는 것이다. 이 說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第一로 法の 본래의 規律의 對象은 公水漁業이고 公共水面이 一般의 漁業에 解放되어 있는점에 規律 卽 相互의 調整을 必要로 하는 根據가 있다. 資源의 適正利用이라 하고 自由競爭의 制限에 의한 漁民保護이라 해도 어느쪽도 前記의 調整에 속하는 문제이어서 본래 一般의 漁業이 들어갈 수 없는 非公共水面에는 이 觀點에서의 規律이라면 不必要하다. 第二로 法の 본래의 規律의 對象은 公水漁業이고 非公共水面에의 公水漁業에 대한 영향때문에 例外이다. 非公共水面은 一般의 漁業에는 提供되어있지 않는 水面인 까닭에 그 영향이란 資源面에서의 그것에 불과하다. 결국 連接一體面에서의 法の 適用은 거기에서도 事實上操業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 아니고 公水漁業과 資源的으로 連관점에

그 근거가 있다. 적어도 連接一體面도 非公共水面으로서 그곳에서의 一般의 操業을 規定하고 있지않는 法에 대하여 操業을 前提로 한 調整을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다.

V. 結 語

우리 水産業法에는 水産法規가 全面的으로 適用되는 水面(公共水面과 連接一體水面)에 通하는 水面에 關하여는 아무런 言及이 없는데 이는 立法上의 不備이다. 여기에서 通하는 것이란 連接一體보다는 넓어 水路를 가지고 直接 또는 間接으로 通하는 私有池 沼 또는 私設溝渠를 가리키지만 이러한 通하는 水面에도 水産調整 또는 水産資源의 保護培養의 實効를 기하기 위하여는 어느정도 法의 規制가 必要하므로 水産法規中의 特定の 規定의 適用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日本漁業法 第73條와 같이 公共의 用에 供하지 아니하는 水面이라도 公共의 用에 供하는 水面 또는 連接一體面에 通하는 것에는 命令으로서 漁業調整에 關한 命令의 規定 및 이것에 關한 罰則을 適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水産業法에도 이를 明文으로 立法化시켜야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韓國水産法制 楊世植 第一文化社 1987.
- 2) 水産法規解説全集 水産法規研究委員會 昭和 63.
- 3) 漁業法 井出正孝 日本評論社 昭和 17.
- 4) 漁業制度序說 大國仁 中央法規出版社 昭和 55.
- 5) 判例通達에 의한 漁業法解説 工藤重男 大成出版社 1970.
- 6) 新漁業法解説 岩本道夫 水産社 昭和 37.
- 7) 水協法 漁業法解説 平林平治 洪本辛生 漁協經營センター出版部 昭和 63.
- 8) 漁業制度重要例規集 水産廳 昭和 60.
- 9) 實用漁業法詳解 金田禎之 成山堂書店 昭和 60.
- 10) 200カイリ時代と 日本의 水産 川崎健 田中昌一 恒星社厚生閣 1981.
- 11) 日本漁業의 法律問題 佐藤隆夫 勁草書房 1978.
- 12) 國際法講義 李漢基 博英社 1985.
- 13) 海洋法 柳炳華 博英社 1987.
- 14) Fisheries Management dacky/Nielson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83.

Summary

Fisheries Act is to provide for scope of application as follows :

- (1) Except as provided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waters other than a public one.
- (2) If waters other than a public one are connected to and integrated with the latt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apply to the former.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se Fisheries act.